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2017

CONTENTS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2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원칙	8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근거	9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대표)협의체	16
	2. 실무협의체	31
	3. 실무분과	35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9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52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53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2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68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9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6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5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25	
IV. 기타 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138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원칙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근거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 지원
 - *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사업(3개)은 국고 지원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 특히, '12.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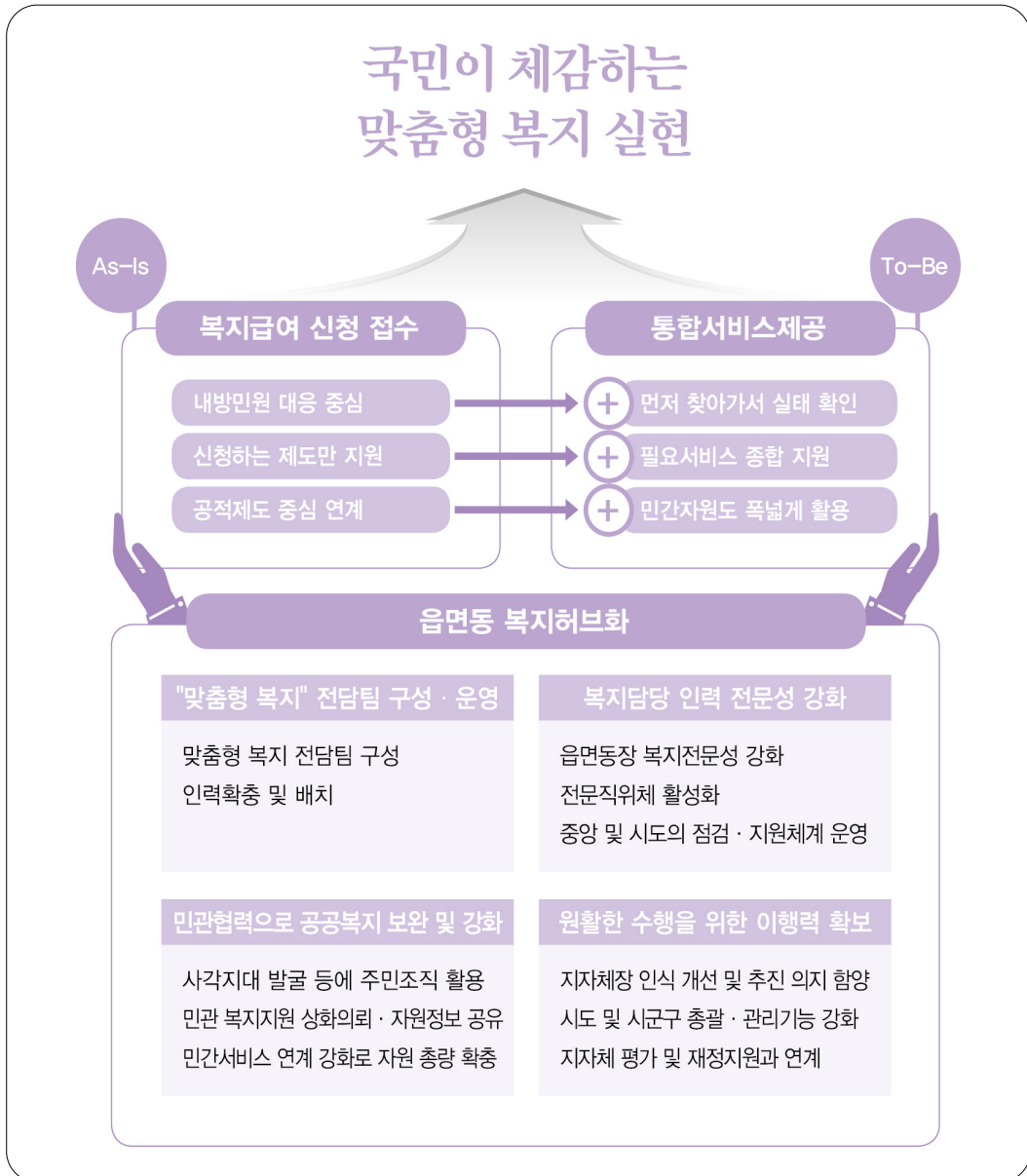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 특히,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목표

- ◆ 수요자인 국민의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 ◆ 일선 복지인력의 통합서비스 제공여건 마련, 전문성 강화
-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

-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 발굴 및 심층상담
 -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 지원
-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및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
 - 지자체 여건, 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로 통합서비스 활성화

- 읍면동장 복지경력 강화, “전문직위제” 활용 등 복지인력 전문성 제고
-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총량 확충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변화 추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

구 분	'05.7.31. 이전	'05.7.31.~'15.6.30.	'15.7.1. 이후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성 격	심의/자문기구	심의/자문기구	기능 강화
비 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현재까지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복지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토대로 한 민관협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 이는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이 필수적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축소되고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
-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 특히,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함.
 - ②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함.
 -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구성과정에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
 -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지향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실정에 따라 초기에는 공공의 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상황에 따라 방식을 달리 채택할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동일함.
 -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공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특성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임.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가. 목적

-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로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지원대상·자원 발굴 확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 복지자원 발굴 형태 : 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 ** 2016년도 지자체 시행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집 참조(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조사연구자료)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파일 공유)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 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총 72개 기관 읍면동 의뢰가능, 보건소·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복지대상자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 상반기 중 종합·노인복지관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

- 즉, 마을 또는 생활권역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

나. 법적 근거

구분	기 존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2년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협의체/실무협의체 조직운영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비고	-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직원 배치('14년, 200명)	-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구 분	기 존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가정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위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처우수준		- 위촉, 명예직(민간 위원)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비 고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원칙

1)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비예산사업 포함)

2)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 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 *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보장 주체들의 존재와 다양한 활동 전제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원활한 기능 수행

3)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 네트워크 조직으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관계 존재, 자원 교환 및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상호작용,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 합의된 규칙에 의한 통제, 구성원 사이의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함.

4)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5)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 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주체의 연대성 강조

6)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 * 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 기획사업
 - ① 문제의 발견과 분석 - ② 지역사회 욕구조사 - ③ 사업기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 ④ 평가 - ⑤ 평가결과 환류의 선순환체계 형성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 (대표)협의체
2. 실무협의체
3. 실무분과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 (대표)협의체

가. 구성의 원칙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함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이 세 영역은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구성주체임
 -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 * 예시) 대표-실무협의체 간 의사소통 및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운영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함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자체의 장과 위촉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촉 임기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동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자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당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므로 잔여기간 동안 위원으로서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임명직(공공부문) 위원

- 임명직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구 구청장이 통상 특정 직위를 지정하여 위원으로 임명함
- 사회보장분야의 범주 확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취지를 반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기관(공공)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예시 또는 권고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사업 추진방향 조율 또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권고사항)
- * 기존 복지위원 관련 규정 삭제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의 하나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사회보장급여법 개정사항)

※ (임명직 위원 예시) 자치구 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사회보장영역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2) 위촉직(민간부문) 위원

- 민간부문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의 장 위촉하도록 함

*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관련법인·시설·단체 등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

- ※ (예시) 사회보장 관련 영역 인적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을 선출한 경우에 위원의 해촉 및 사퇴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가 가급적 대표위원직을 승계하도록 함

3)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

-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의 차기 대표위원은 지자체의 장이 현재 대표협의체 소속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위촉하고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
 -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 공모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수요자(이용자)대표 위원 응모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 위의 해당 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 (예시) 공단 밀집지역의 고용분야 종사자, 이주민 관련 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문화·체육(여가)·교육분야 종사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하여 구성함

5) 위원 임명·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시군구 지자체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함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희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신원조회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와 구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내부기구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협의체 내부기구인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 위원 등에게 적용함은 법적 근거를 미비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항은 협의체 위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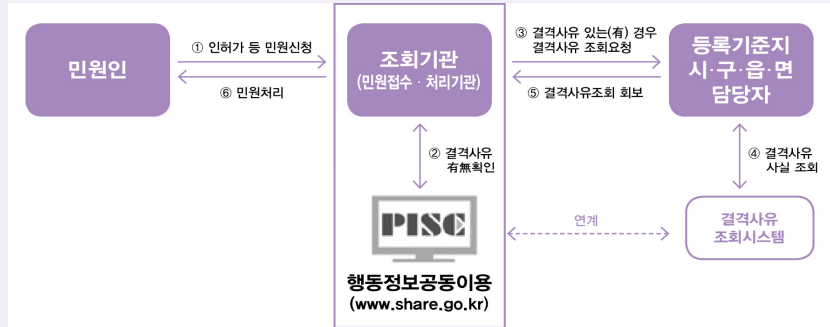
1. 목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 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리

-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 나.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 종전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후견등기제도가 도입되고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 다만,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이미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자는 새로이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때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부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효력을 상실함
- 다.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견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 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개정으로 2013.7.1.부터 도입 시행
- 라.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마. 결격사유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 바.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 사.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을 의미
- 아.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 자.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 결격사유조회의 개선절차(16.9.30.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有無) 확인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 행정전자서명(GPKI)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가. 결격사유 유무에 따른 업무처리

- (1) 결격사유가 없는(無)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출력 가능
- (2) 결격사유가 있는(有)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 결과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 조회기관(민원접수·처리기관) 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조회 요청 시 공문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기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 (1) 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이 관장한다.
- (2)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 (3)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4)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 (1) 수형인명표 관리
 - (가)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형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나)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 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민간 참여 다양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은 지역특성, 인적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연임여부를 정하도록 위임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자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市·道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상 市·道 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은 가지는 직을 포함하고 있는 바, 사실상 市·道 의원이 민간 위촉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서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당 수 지자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을 함께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함

- ※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은 민간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함
-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장기관(지자체 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결위된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함

- 공동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단독 위원장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을 단독(공공, 민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읍면동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다만, 법령상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선출도 임의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위원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따라 동일 해석

마.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위촉직 민간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연 3회 이상 개최함이 바람직
-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개최주기에 따른 정기/임시회의의 구분은 조례 규정사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보장기관)에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시 사회보장분야 종사자로 고려할 필요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대표협의체 구성(예시)

임명직 위원	자치구 대표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고용·주거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네트워크 대표자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대표 -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연계영역 대표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 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협의체 소속 전담직원은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은 반드시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또는 논의하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예시) 〉

기능	주요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예시) 민간협력사업 추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 자활지원, 유사중복 사회보장 지침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예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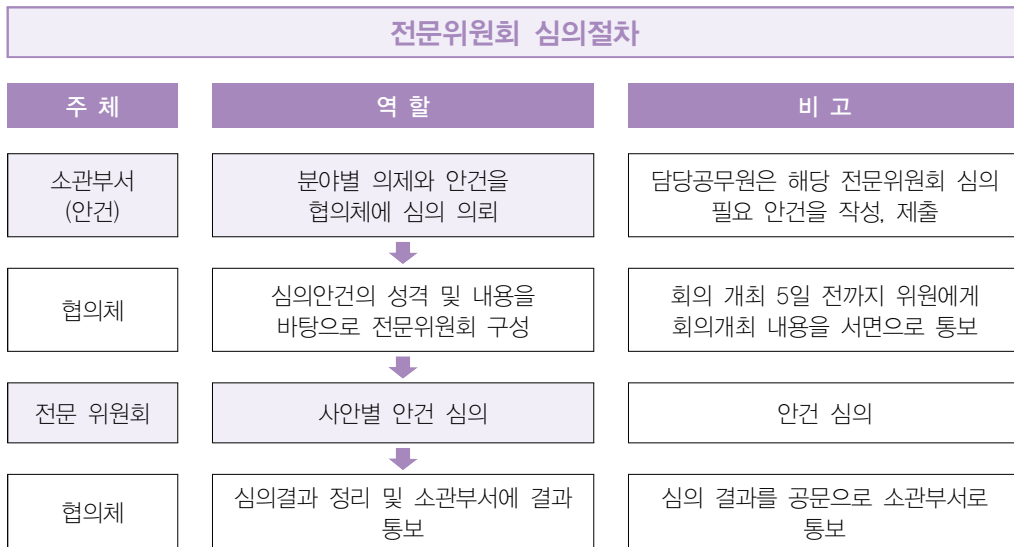
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 *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예시)

위원회명	근거	기능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30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p>※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20조 단서조항)</p>
시·군·구 의료급여심의회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p>※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p>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p>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조항)</p>
자활기관 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위원회명	근거	기능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 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관리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
노숙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입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지방청소년육 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심의

※ (검토사항)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 가능

-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도) 중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추진
 - 복지관련 주요 사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각종 법정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등)와의 통합 운영 검토

2. 실무협의체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
 - 다만,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1) 임명직(공공부문 대표) 위원

-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범위내로 구성(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 균형성 유지)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 (예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 관계부서장 참여 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와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위원의 참여도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2) 민간부문 위원

-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통상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실무 분과장으로서 소속 분과를 운영(권고사항)
- 민간부분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

※ (예시) 실무협의체 민간 위원은 해당 영역의 실무분과장을 겸임하여야 함
 - 실무분과 위원의 합의 또는 호선에 선출된 실무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단계를 확고히 해 주어야 함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지역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연계·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를 관련분야 영역의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등을 사회복지 해당 영역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체육, 관광, 경제 단체, 지역기반의 기업 등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영역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실무협의체 구성(예시)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복지업무 담당 소관업무(사회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담당 팀장 등
- 사회복지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분야 등 관련 영역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의 중간관리자 등
- 기타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등
 - ※ 협의체 사무국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권고/예시사항)

다.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실무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운영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사례를 준용하여,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 안건, 예시)**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복지급여 제공 및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 추진 사항 등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실무분과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 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나. 위원의 구성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함(권고 또는 예시사항)

※ 실무분과 운영

- 분과장의 역할 : 분과회의, 분과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 총괄
- 총무(간사)의 역할 : 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

☞ 실무분과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1) 공공부문 실무위원(임명직)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됨
-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는 해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됨
- 해당 공공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분과 위원이 되고 임기는 보직 기간과 같음

* 예시) 보육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보육 또는 아동분과 실무분과 위원
노인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노인분과 실무분과 위원

2) 민간부문 분과위원(위촉직)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복지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관련기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 시설,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이 될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

3) 기타 연계 영역

- 사회복지영역의 확대를 반영,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다. 실무분과장의 선출 및 임기

(조례 규정사항,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선출과 임기 등을 준용)

-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구성방식 준용
-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 권고
 - *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권자, 실무분과의 위상을 고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권고)
- 사퇴, 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
- 각 실무분과의 위원 수는 지역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독거·학대 등 대상자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필요

1) 대상별 분과

- 지역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응대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다문화가족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등)

2) 지역별 분과

- 농어촌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별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가능

3)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 가능함
-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 실무분과 구성 예시

대상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노인(어르신)	장애인	-	-
기능별							
고용·주거(자활고용/주거환경)	마을분과	문화·체육(문화환경/교육문화)	(통합) 사례관리	자원관리 개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	-
지역별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정)하는 자 또는 간사(총무)가 대신할 수 있음
- 실무분과 정기회의는 최소 6회 이상 개최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 배경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안전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 수 확대 필요(40명 이상)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규모 및 내용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복지위원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만으로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의료인, 기술·기능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1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읍면동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법 개정안 발의(정부안)

- 읍면동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 등 필요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

- 읍면동 협의체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 하며, 서기는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협의체 운영업무 지원

* 예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담당직원으로 함(필요시, 민간 인력도 간사 역할 수행 가능)

4)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임기 중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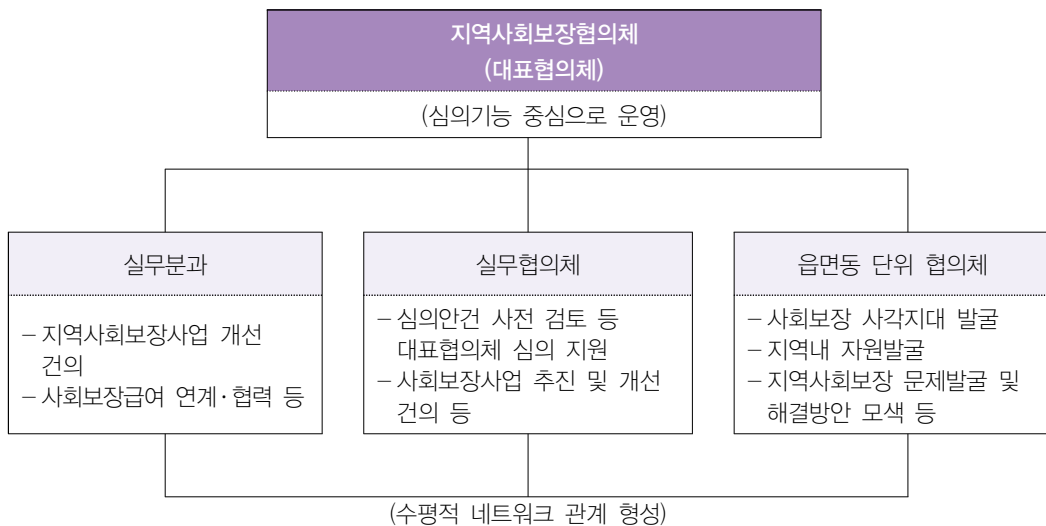
* (예시)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조직

-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조례 또는 운영세칙 규정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예시)〉



6) 회의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회의개최 주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주도과 개입은 가급적 지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시) 읍면동 협의체 주요 논의 안건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의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및 지원 결정,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사항, 읍면동협의체별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사항, 그 외 읍면동 내 복지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위원장 주재로 진행(공동위원장일 경우, 민간인 주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기구 간 역할 구분(예시)]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정책 및 사업 심의	상위계획	심의·자문권		
	지역 사회 보장급여 제공 및 사업계획 심의/자문	-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 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 실무분과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업 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으로 실무협의체 업무수 행을 지원(실무분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기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등(법령사항)	좌 동	
	지역사회 보장조사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 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설계·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사항 - 시군구청장 또는 실무 협의체 위원장이 지역 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 동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부와 포함)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자원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 조사실시·조사결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	-
	사업결정 협의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 조정 및 개선	건의	건의
	시행결과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 분야별/기능별 실행과정 점검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건의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주기능	민관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정 모니 터링 및 서비스 제공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할에 해당함)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사업	- 사회보장 분야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분야 연계 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관련영역 등 사회보장 급여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안전 검토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 분야별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사업	-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방안 논의	- 관련영역 기관 등의 역할 부담 조정	- 지역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법인이사 추천	본 지침의 96-102쪽 내용을 참고,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기타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 협의체가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협의체의 심의·자문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내용을 구성(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은 위임 범위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
- 위원장(실무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 업무 분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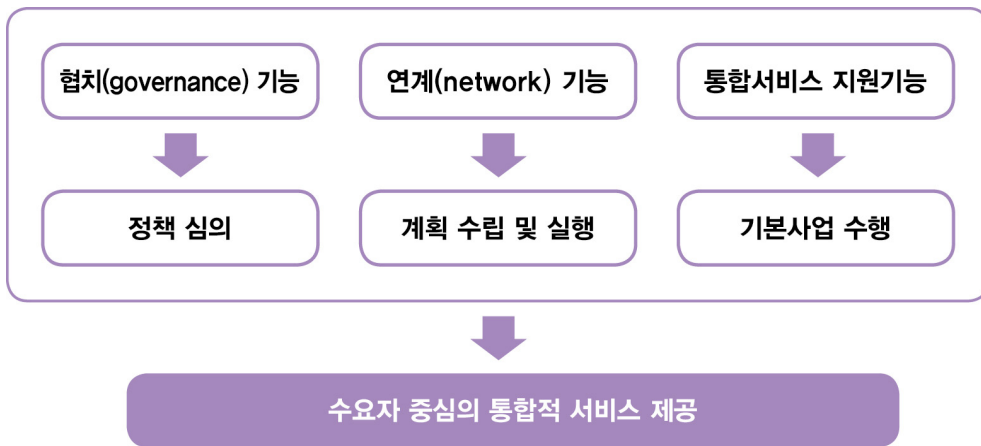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가.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6조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①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2017년~2019년 • 2기: 2011년~2014년 • 3기: 2015년~2018년
	②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절차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절 차	내 용	비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 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 지역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사회보장관련기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법제36조 제5항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 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36조 제1항
		
지역주민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법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절 차	내 용	비 고
협의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5조 제2항
↓		
의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의회 보고 	법제35조 제2항
↓		
시·도에 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제3항
↓		
조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 	시행령 제22조
↓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권고사유]

1. 법 제35조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조사)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①항
↓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수급상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1조②항
↓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③항
↓		
조사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필요
- 「시·군·구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군·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에 의한 평가계획
-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모니터링)

* **모니터링** :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집행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사업 변경 등의 근거로 활용
-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모니터링 주기 및 시기

- 모니터링 주기는 통상 연 1회 해당 연도 중에 실시하고¹⁾ 시기는 (다음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시기 전에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1) 분야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함으로 연중 진행할 수 있음.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절차

절 차	내 용	시 기	비 고
모니터링단 구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단 구성 계획 수립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 결재
↓			
모니터링 지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섭외 : 지표개발·통계작성 결과보고서 각분야별로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의견수렴
↓			
모니터링단 모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단 모집/교육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인원 모집 후 지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시행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 요원 교육 후 작업 시작
↓			
통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통계 	9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를 통해 통계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지자체 보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연차별시행 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연차별시행계획 작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전문가 섭외, 각협의체 의견수렴 전문가 섭외 : 연차별시행계획 작성 실무협의체·실무분과 : 연차별시행 계획 의견수렴
↓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시행계획 심의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협의체 심의(사무국) 시군구 제출 시도 제출 : 11월 30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시기는 각 시군구협의체에서 여건에 맞게 진행하되, 11월초에는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함.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항목인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점검
- 가급적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시행결과와 관련된 정책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 근거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제고

3) 평가 주체 및 역할

- 시군구
 - 시군구의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할 자체 평가팀과 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회* 구성
 - * 자체 평가위원은 가급적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계획 수립·시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상 절차상 단계별로 계획 수립의 타당성 평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중장기 성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만 법적근거 마련·시행

● 시·도

- 시도의 자체평가는 시군구와 동일하게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
- 시도는 시도 계획 및 연차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

- 시군구 및 시도의 자체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매뉴얼 개발과 보급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역 사회보장계획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추진
- 시·도 계획 시행결과 및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선정,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적극 홍보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정례화로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4) 계획 시행결과 평가방법 및 절차

- 제3기 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매년 수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 과정평가이며, 계획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의 의미 함유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행결과 평가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평가로써 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항목

추진과정 관련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시행결과 관련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 평가절차(예시)

절 차	내 용	비고(예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 결재
↓		
자체평가단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구성 (평가위원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 위원,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직 : 지자체 소관부서/협의체 사무국
↓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평가보고서 초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단 : 연차별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에 관련 논의 후 역할분담 현장전문가 : 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 (안)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계획 시행 결과 평가보고서(안) 의견수렴 및 보완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팀 : 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의견수렴 * 자체평가단 : 추가의견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
↓		
평가위원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시행계획 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된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서 작성
↓		
대표협의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평가결과보고서 대표협의체 심의 시군구 결과 통보(심의결과와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시군구 : 시도 제출(익년 2월 말까지)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과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2) 추진 목적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제시
- 지자체별 사회보장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사회보장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 설정에 활용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유도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3) 지표 체계구성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 : 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여건·투입·결과·성과 측면의 균형적인 지표 개발(총 224개)

4) 지표체계의 이해

수준 지표	역량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성과(outcome)지표 • ‘여건 지표’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 ‘산출 지표’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성과 지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 수준지표 = 여건(환경)지표 + 영향 및 성과지표(outcome), 역량지표 = 투입지표(input) + 결과 및 산출 지표(output)

● 핵심지표와 부가지표

핵심 지표	부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의 높은 주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표 외의 지표

5)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도입·적용방안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계획기간(‘15~’18) 중 단계적 확대 추진
 - ‘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표(225개) 중 지역사회보장 여건지표(36개)와 핵심지표(96개) 위주로 우선 도입
 - 지표의 기능 및 계획체계를 고려할 경우, 중점 추진사업 수준에서 여건 및 목표 수준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고,
 - * 사회보장급여법상 계획내용 체계가 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
 - 다만, 세부사업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표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 (제3기 계획, 광역) 전략목표 3~5개, 핵심과제 4~15개, 세부사업 14~56개로 구성
 - ** (기초) 전략목표 3~5개, 핵심과제 9~15개, 세부사업 25~60개로 구성
 - 다만, 핵심지표 중 만족도·인지율 등 지자체의 신규 조사가 필요한 성과지표(13)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가급적 배제

● 여건지표 (36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설명
돌봄 (아동)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관내 만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수
	4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관내 초등돌봄 교실 설치 운영 학급수 관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관내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개소수, 지원액)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실태(설치 개소수 및 지원액)
돌봄 (성인)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지역의 장애인 관련 욕구의 규모
	9	노인돌봄 욕구	지역의 노인 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
보호 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대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시설 수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부과자 중 체납자 비율
	14	만성질환자 비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받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지역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교육	16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단위인구(1만명) 규모로 보정한 값
	17	단위 인구당 학교 수	각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 학교 수 인구 만명당 학교수로 보정하여 산출
	18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수
고용	19	고용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설명
	20	장애인고용률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고용기회와 일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 및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취업자 수를 파악
	21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근로소득의 상실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여건지표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지역 중위가구의 월소득 대비 중위가구의 월 임대료
	23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인구 1천명당 주택수
	24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
	25	지가 점유율	일반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문화 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총 면적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의 합계
	28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인구 10만명당 확보된 영화 스크린 수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장애인 체육관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의 합계 장애인구 1만명당 시설 수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인구로 나눈 값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조성된 녹지의 면적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인구로 나눈 값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전체 시군구 주민 중 차지하는 비율로서, 공적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최빈층이 규모를 표현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활사업참여+장애인아동수당+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우선돌봄사업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지자체의 복지재정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36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지자체의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무원 인력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 핵심지표(96개) 중 영향지표(19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 정의
돌봄 (아동)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품질관리 여부의 확인을 위한 핵심 지표
보호 안전	2	학대/폭력 사례수	단위 인구 (1만명) 당 학대/폭력 사례수
	3	재학대 판정률	전체 학대 사례 중 2회 이상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비율
건강	4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의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의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5	기대 여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교육	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자기 평가 건강수준과 관련됨)
	7	평생학습 참여율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값을 활용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로 판명된 학생의 비율
고용	9	초중고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단,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부적응의 이유로 중단한 경우에 한함
	10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통합적 서비스 실태를 파악
주거	11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내 사회적기업의 생존기간을 평가
	1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
환경	13	강제이동 비율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집세가 비싸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동한 비율
	14	환경성 질환자 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15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
	16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가구의 빈곤개선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 단체로 이전, 타가구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남은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의 변화 파악
	17	빈곤인구 감소율	상대적 빈곤상태 인구의 시군구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빈곤상태의 개선상태를 파악
	18	상대적 빈곤율	현재 지자의 빈곤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중위소득 50%)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
	19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표현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2	'시군구 특화사업' 00지원 적정성 심의
3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5	재산의 소득환산제외 심의
6	이자소득 반영제외 심의
7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8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9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10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1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2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예시)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해당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 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1	자활기금 용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2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3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4	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5	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6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7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9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10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법정 사무)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1) 제도 개요

①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13. 1. 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2013. 1. 27.>

부 칙 <법률 제11239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2017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1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 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복지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 : 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 : 2명 (2배수 이므로 4명 추천 요청)
4. 기타 : ○○○

붙임 : 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

2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2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게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 :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 외부추천이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가능 여부 〉

- (질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조항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의 해석과 관련,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16.3.31.)한 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16.7.27)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외부추천이사 임무와 책임한계 관련 〉

- (질의) 외부추천이사 선임시 다른 등기이사와 책임 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 (해석) 외부추천이사와 등기이사는 이사 위촉 과정이 다를 뿐 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최종 이사로 임명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그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

- (질의) 모 법인에서 외부이사 2인 중 임기 만료(두분이 만기일이 다름)가 되자 연임의사가 있는 분은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1분만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의 입장은 외부이사로 받은 분을 연임의사가 있어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1명만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의 추천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할까요?
-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은 추천이사 선임사유(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선임 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외부이사 재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법인에서 외부이사 연임의사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절차 없이 임원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면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추천을 요청하여 재선임 절차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요구하는 추천 요청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자격변동 발생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

- (질의)** 기존에 추천했던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규정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할 경우, “외부이사의 추천자격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 이 중 제2호(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3호(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5호(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추천한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외부추천이사의 자격에 위배되므로
 -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외부추천이사 이사자격 관련, 협의체 조치사항 〉

-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 제7조2항 3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3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3호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근거로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²⁾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14.5월)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14.7월)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공공주도형)” 시행('14년 1억원 5개소 → '15년 2억원 10개소)
-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15.7월 시행)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확정(「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합동, '16.2.3)으로 읍면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

2) 운영 원칙

■ 기본 방향

- 시군구청,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 지역 내의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대 구성
-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사회복지관련 기관(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등) 자원 봉사 단체, 주민자치조직 등

2)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협의체)로 표기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

추진체계	역 할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및 예산 지원 •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운영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총괄 매뉴얼 마련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 •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읍면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회계 포함) 일체 담당 • 읍면동 협의체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 ** 시군구 차원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과 조율될 수 있도록 시군구 협의체 심의 사항으로 상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 자체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시군구 운영매뉴얼 마련

-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 (활용) 매뉴얼은 모든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내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가구 발굴 시 조치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

■ 읍면동별 운영세칙 마련

- (필요성) 매뉴얼과 별개로 각 읍면동 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칙 마련
- (작성방법)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시군구 운영매뉴얼에 규정 가능
- (주요내용)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 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등

3) 읍면동협의체 주요 기능

① 복지대상자 발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 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

〈참고 : 발굴체계 사례〉

-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 민간자원으로 독거노인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
- 충남 천안시 :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사업
 - 집배체계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전남 순천시 : 소망소리함
 - 관공서에 소망소리함을 설치,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 독거노인-초등학교 봉사동아리 연계
 - 복지협의체 위원인 초등학교 교육전문가 주선으로 관내 독거어르신과 초등학교 봉사동아리를 연계, 상호 심리·정서적지지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
 -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동절기 일제 조사 등과 연계

<참고 : 취약계층 일제조사 사례>

- 서울 노원구 : 남성 독거노인 전수조사, 법정 차상위 전수조사
- 경기 오산시 : 동절기 단전기구 현장조사, 취약계층 집중 일제조사
 - 창고·지하철 등 거주자, 찜질방·고시원 등 장기 거주자 및 아동 동반 투숙자 등
- 부산 서구 : 한부모 가정 전수조사
- 대구 서구 : 행복올타리사업(50세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 광주 광산구 :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 194천 가구 전세대 조사
- 광주 광산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독거노인 우울·자살실태조사
 - 자살률이 높은 우산동 지역 독거노인 대상으로 우울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0여명의 우울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책 마련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참고 :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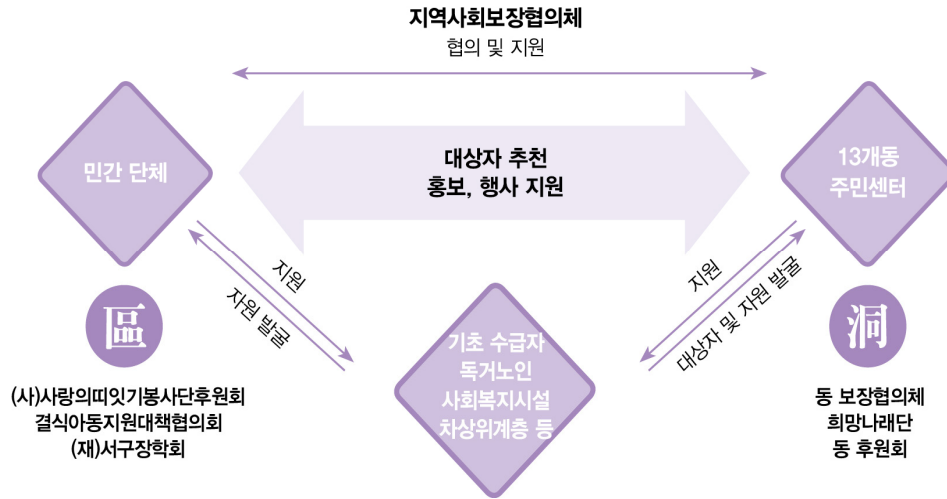
-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절 차	내 용	비 고
<p>복지대상자 발굴</p>	<p>-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p>	<p>* 읍면동 협의체 위원 만이 아니라 통(이)장, 부녀회 (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시 협의체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p>
<p>읍면동 주민센터 보고</p>	<p>-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p>	<p>*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p>
<p>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p>	<p>-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p>	<p>*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p>

1. 부산광역시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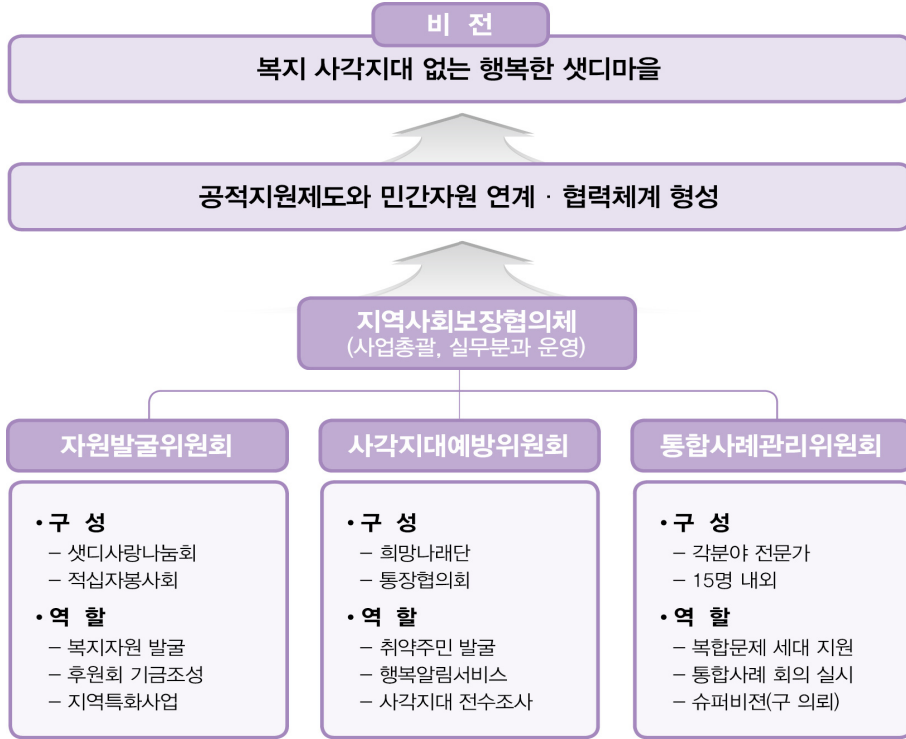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 협력내용

- 구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 동 : 지역의제 선정, 사회보장대상자 및 사각지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역단위자원 및 외부자원 발굴 연계

■ 남부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 1차 조사 대상: 노인, 안부확인 등 제공
- 2차 조사 대상: 장애인, 사례관리 등 제공
- 3차 조사 대상: 치매우려자, 치매검사비 지원 등
- 4차 조사 대상: 생계곤란자 발굴, 주민신고분, 사례관리 등 제공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선진지견학 : 2회

2. 부산광역시 수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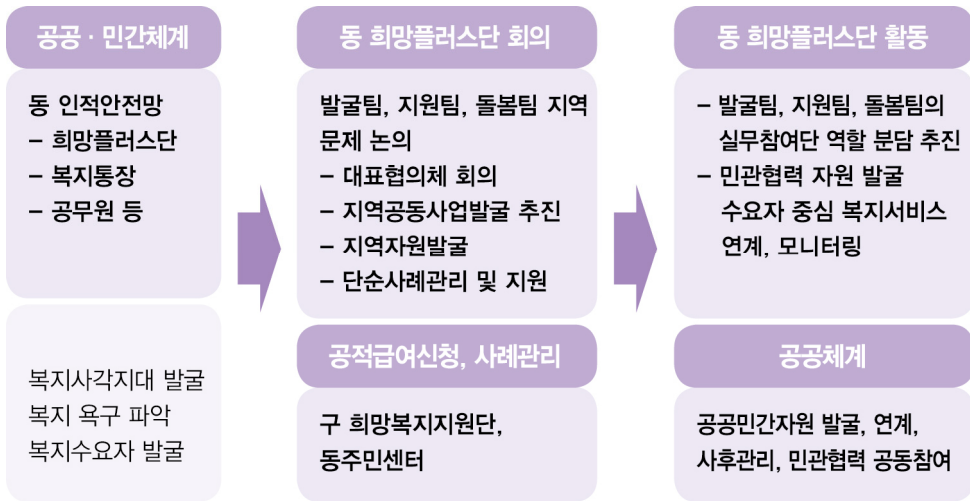
이웃이 이웃을 돕는 민관협력체 희망플러스단 사업

■ 사업목적

- 숨어있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나눔 문화 활성화,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14.3.1.~ 계속
- 사업추진체계



● 희망플러스단 구성, 운영

◆ 희망플러스단 :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주민참여형 민관협력체로 민간단체 주민 조직, 개인 등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후원, 봉사, 지원하는 활동을 함

- ▷ 2014년 3월 기준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민관협력 단체를 희망플러스 단으로 재조직화
- ▷ 목 적 :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주민참여형 복지시스템을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실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함
- ▷ 참여인원 : 1,641명 (동대표협의체 141명, 실무참여인원 : 1,500명)
- ▷ 구 성 : 발굴팀, 지원팀, 돌봄팀으로 구성

구분	발굴팀	지원팀	돌봄팀
역할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발굴·신고	긴급 생계, 의료비 지원 후원금품, 집수리 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주요 내용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전수조사 참여 찾아가는 취약계층 발굴	민간복지기금 조성, 자원발굴 - 위기가구 생계, 의료 등 지원 - 생필품, 무료식사, 이미용, 반찬, 집수리, 학습지, 교복 지원 등	안부확인, 독거노인 생신잔치, 안부전화, 세탁서비스, 겨울 문풍지, 보폭이 설치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주요 참여자	파출소, 소방서, 119 복지동장, 복지위원 등	자생단체원, 식당, 사업장 기업, 민간복지 후원단 등	부녀회, 적십자 봉사회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비예산 (기부와 나눔으로 진행)

■ 사업성과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자원 총량 극대화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정부, 지자체 등 공공자원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원을 통해 보완
- 지역주민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매년 자원 발굴 및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2014년	2015년	2016년 (3월)
자원발굴 515건 584,494 천원	자원발굴 705건 709,629천원	자원발굴 190건 112,975천원

● 동희망플러스단 활동 주요 사례

사업명	내용
맥가이버 삼총사 수영동 희망플러스단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가이버 삼총사 : 기초수급자 중 3인으로 구성, 재능기부 (자신이 도움 받아 변화 된 삶을 누리고 있어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 구성) - 취약계층 가구의 작은 집수리 (간단한 전기, 수도, 형광등 교체, 차단기, 전자제품, 우산수리 등) 지원→신청인 수리 재료비 살비 부담 - 2016. 3월 구성, 6가구 지원
우리동의 희망+ 다사랑회 망미1동 희망플러스단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미1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 후원단체 - 2003년 결성, 매월 15가구 150만원(1가구 10만원), 연1,8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및 긴급 생계, 의료가 필요한 가구 - 취약계층 발굴 및 가정방문 실시, 사례회의를 통한 긴급생계, 의료비 지원 2003년~2016년 현재까지 838세대에 231백만원 지원
안전 돌봄, 위기 예방 망미2사랑회 망미2동 희망플러스단 발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미2동 주민으로 구성하여 독거노인 돌봄, 살핌 역할 추진 - 안전 돌봄, 위기 예방 사업 추진 : 독거노인 50세대에 매월 계란, 밀반찬 전달 - 주1회 가정방문 모니터링으로 위기사항, 필요한 복지욕구 파악 → 동주민센터 즉시 전달하여 독거노인 위기해소 시스템 구축 운영 - 연2회(명절) 위기가구 백미 전달
엄지마을 복지지원단 광안1동 희망플러스단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안1동 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 15.5월 39명이 주축이 되어 시작, 16.5월 정기후원자 82명으로 확대 운영 -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발굴과 나눔문화 활성화 주도 - 위기가구 백미지원, 긴급 생계지원, 겨울 한파 생수지원 등 122세대 500만원 - 자체 기금 14,216천원 확보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16. 5월 말)
통통 장어탕 데이 민락동 희망플러스단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독거노인 무료 점심 식사제공 (매월 1회) - 대상자 선정(월100명)→ 쿠폰발급→ 식당'통통 장어구이' 식사 - 사각지대로 발굴된 독거노인 일상생활 욕구 해결 및 안부확인 - 희망플러스단 돌봄팀이 식당 서빙, 노인 동행 등 협력 추진 - 2014.10월부터 현재 18회 1,800명 지원

복지대상자 발굴 우수사례 참고

3. 강원도 횡성군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 사업목적

- 자원봉사자 및 단체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로 자원봉사의 효율과 균형 확보
-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선진형 복지 실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내용 : 443건 지원

계(명/천원)	접수리	생계	주거	의료	생필품	자활훈련비
3,468명/ 213,121천원	35명 77,072	441명 22,438	93명 35,276	22명 11,244	2,875명 64,516	2명 2,575

- 사업기간 : 2014. 12. 13 ~ 지속
- 사업추진체계
 - 민·관 역할
 - 관 :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 접수민원 건 공동 사례회의 등 행정지원 추진
 - 민 : 분과 통합사업시 자원봉사자 참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참여 (223개 단체를 13개 분과로 지역별·기능별로 그룹화)

* 2개월 1회 : 분과별 회의, 분기 1회 : 대표위원회 회의(각 분과장)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1365콜센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접수 → 가구방문 → 사례회의 추진 → 지원결정(성금지원 또는 자원봉사 단체 재료비 지원 등)
 - 행복봉사공동체 13개 분과별 회의 : 2개월 1회
 - 통합사업 일정 및 가구 선정 등(성금 재료비 지원)

■ 사업 성과

- 자원봉사자를 하나로 묶는 봉사네트워크 구축
 - 수혜가구 공유 및 중복방지, 명절 위문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방지, 분과별 통합사업 선정 추진(86건)
-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 운영 : 671건 접수(처리:567건, 처리중:22건, 제외 : 82건)
-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인원 증가(2014.12월과 비교)
 - 186개 단체 → 223개 단체(20% 증가), 6,730명 → 8,632명(28% 증가)
-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 구축
 - 성금지원현황(2015년:88건/155,819천원, 2016년:36건/57,850천원)

복지대상자 발굴 우수사례 참고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고는 서대문 카카오톡, 관리는 서대문 행복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사각지대 없는 서대문 만들기 사업

■ 사업목적

-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
- ※ 차별화된 IT기술을 복지와 접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 추진 →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대문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
- 지원내용 : 카카오톡과 서대문 행복맵(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 지원, 관리의 전 단계에 민·관 협력을 추진
- 사업기간 : 2015. 3. 9.(월) ~ 연중

	서대문 카카오톡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발굴신고)	서대문 행복-맵 (서대문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일	· 2015.8.27.(자치구 최초 구축) ~	· 2015.3.9.(자치구 최초 구축) ~
추진목적	· 즉각적인 복지사각지대 신고 활성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의 전산화
주요기능	·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견 즉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카카오톡 신고 가능 ※ 주민리더(복지통장, 동협의체 등)와 복지관 종사자(학교, 병원, 복지관, 종교 기관 등), 사각지대 발굴 협약자 신고 → 서대문행복1004콜센터 신속 대응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대상 실시간 현황 관리 및 DB 전산화 ※ 위기상황 위험도 색상 구분 (고위험 : 빨강, 중위험 : 주황, 저위험 : 파랑) ※ 지도의 출력 가능 (통별, 가구별) · 방문대상자 욕구별 서비스 검색기능
시스템 구성도	 <p>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창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복지대상자 현황 지도</p>

● 사업추진체계

	발굴·신고	지원	관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공무원 • 민간 :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통장, 동협의체(14개동) - 사각지대발굴 MOU(11개소) - 학교, 병원, 복지관 등(9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공무원 • 민간 : 복지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공무원 • 민간 :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통장, 동협의체(14개동) 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 발견 시 신고 → 카카오톡 등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행복맵 대상 입력 및 욕구 조사, 맞춤 연계 추진 • 민·관 : 발굴된 취약가구 협력 지원 추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행복맵 통한 모니터링 • 민·관 : 취약가구의 복지통장, 동협의체 등 동행 방문 진행, 유대감 증진, 지역보호체계 형성

● 사업추진과정 및 절차



● 사업예산(복지방문지도 시스템/2016년)

계	국고	시비	구비	비고
5,515천원	천원	천원	5,515천원	카카오톡 예산 : 비예산 (예산절감효과)

■ 사업 성과('16. 5. 31. 기준)

● 체계적인 방문 실시 ➡ IT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문 증가

- 방문 실적 : 6,714세대 17,572건(중복 방문 포함)

구분	합계	독거노인	노인부부	한부모	조손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소년소녀	기타
합계	17,572	9,290	774	2,265	115	1,656	1,458	47	1,967

※ 위기도 → 1단계(고위험) : 38가구, 2단계(중위험) : 632가구, 3단계(저위험) : 6,044가구

● 현장 기반의 접근 ➡ 복지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및 관리 가능

- 복지소외계층(주민) : 방문대상자 욕구의 체계적 전산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문대상자 욕구조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10,777건 (임대주택, 고용, 식품, 집수리, 냉난방기 등)	6,215건 (복지급여 신청, 현금·물 지원, 타기관 연계 등)

● 효율적인 민·관협업 ➡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제공

- 방문주체 현황 : 883명 26,753회 (복지동장, 담당, 복지통장, 동 협의체, 방문간호사 등)

구분	합계	민간 인적안전망				공공 인적안전망			
		소계	복지동장	동 협의체	기타	소계	복지동장	복지담당	방문간호사
합계	26,753	8,243 (31%)	6,809	575	859	18,510 (69%)	4,670	8,659	5,181

5.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안심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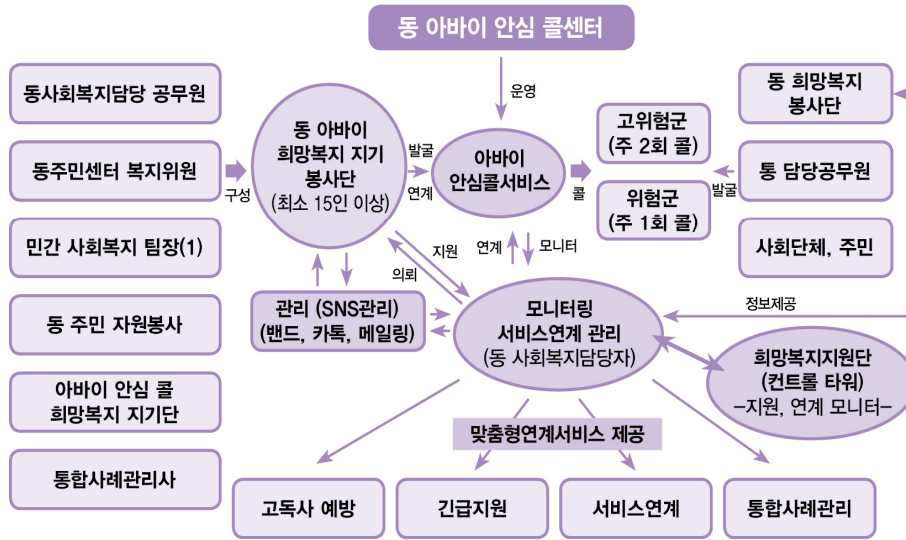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취약대상 가구(장애인, 독거, 질환 등)고독사 예방 및 방지
- 지역 유관기관 및 동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1:1 맞춤형 지원의 민관협력 사회복지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약가구(독거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 지원내용 : 대상가구와 1:1 결연으로 정기적인 콜서비스 제공
 - 안부전화,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적 안정,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위험군·고위험군 분류
 - 지역복지기지(봉사)단 1:1 결연
 - 주1회(위험군), 주2회(고위험군)
- 사업기간(최초 시행시기 포함) : 2014. 3. 31 ~ 현재까지
- 사업추진체계
 - (조직체계) 총괄, 단장, 희망복지지원팀, 활동주체, 자원봉사자
 - (총괄) 주민생활지원실장
 - (단장) 희망복지지원단장
 - (희망복지지원단) 주무관 4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 (활동주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기쁨봉사단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봉사팀, 종합사회복지관, 동 복지위원
 - (자원봉사자) 40명 이내

동 주민센터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운영체계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대상자 선정 : 위기가구 선정
 - 안심지기단(봉사원) 대상자 1:1 연계지원
 - 안심콜서비스 실시
 - 사후모니터링 : 밴드 공지

■ 사업 성과

- 2015년 사업실적
 - 자원봉사자 : 40명, 서비스 이용자 : 40명
 - 활동 누적 실적 : 1,319회
 - 독거사 예방

6. 충청북도 음성군

민·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협력 사업

■ 사업목적

-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효과증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연결
 - ⇒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히 발생 위기가정 발굴 시급
 - ⇒ 위기가정과 행정기관을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 필요
- 지역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는 ‘우편집배원’이나 ‘전기·수도 검침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신고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 지원내용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 사업기간 : 연중(최초 시행시기 2016. 1)
- 사업추진체계
 - 음성군
 - 복지대상자 발굴 및 가구 지원(공공·일반) 및 정기적 모니터링
 - 검침원, 우편배달원 대상 복지인적안전망 강화 교육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홍보 자료 정보 제공
 - 한전 음성지사, 음성우체국
 - 전기 검침 및 우편배달 업무 수행 시 복지대상자 발굴,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한전 사회봉사단, 우체국 햇사레나눔봉사단) 및 지원
 - 단전, 단수 등 체납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 위기가정 발생 시 희망복지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즉시 연락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협약식(MOU) 체결 : '15. 11월
- 복지사각지대 협약기관 교육 : '15. 12월
- 복지사각지대 의뢰·발굴 및 서비스연계 : '16. 1월~

■ 사업 성과

- 상반기 동안 20가구 의뢰 접수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②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시기) 지속 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시군구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자원발굴 사례〉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 월급끝전모으기
 - 지역주민 대상으로 '월급끝전모으기' 등을 통해 약 16,000천원 모금 → 모금액 중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2세대에게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6,600천원)
- 부산 수영구 구락마을 : 희망나눔 운동 1호점
 - 지역내 개인·단체·업체·업소 등 방문, 자원 발굴 홍보, 가가호호방문 후원 독려
 - 50건의 신규자원 발굴(2016년), 희망나눔 운동 1호점 명패부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모금 안내 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793호('09.12.01) 관련]

□ 가능사례 : 단순 접수 및 사용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안내문 게시
 - 이 경우에도 안내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로고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의 모금은 00시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등과 같은 접수와 관련된 단순 안내문이나 주최와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후원임을 표기한 문구는 사용가능
(예: 공동모금회, 00시(X) / 주최 : 공동모금회, 후원 : 00시(O))
-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당해 사업의 수입금은 00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구나 주최가 아닌 단순 후원임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돈을 지자체 복지사업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부분만 금지되므로, 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집 금액을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부금품의 모집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아님

□ 금지사례 : 기부금품의 모집

-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로 홍보물 제작
 - '07년도 주민생활지원 후원업무 처리지침('07.12,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팀)에 따라 공동명의로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기 제작된 홍보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수정(단순 후원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 등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거나, 기부 모집 퍼포먼스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활성화와 관련된 축사, 테입 커팅은 가능

1. 강원도 속초시

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추진(소액 기부운동) 사업

- 추진기간 : 2016. 3월 ~ 지속추진 (강원도 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 모금활동
 - 1시민 1계좌 갖기 범시민운동 개좌· 시민 1인 1계좌 5,000원(계좌 수 제한 없음)
 - 천원의 행복 : 공공민간기관 및 민간기업 직장인 중 희망자 매일 급여의 천원 미만의 금액을 후원
- 지원내용 : 생활안정비, 복지시설 및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나눔 가게·가족 사업

- 사업개요 : 수성구 ⇔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및 고액정기후원 가족을 발굴하여 수성구 천사계좌에 적립하여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착한나눔가게』 : 연300만원 이상('16.8.2부터 연120만원) 3년 기부약정
 - 『착한나눔가족』 : 월5만원 이상('16.8.2부터 월3만원이상) 3년 기부약정
-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사업과 금액 차별화

지역자원 발굴 우수사례 참고

3. 광주광역시 서구

희망플러스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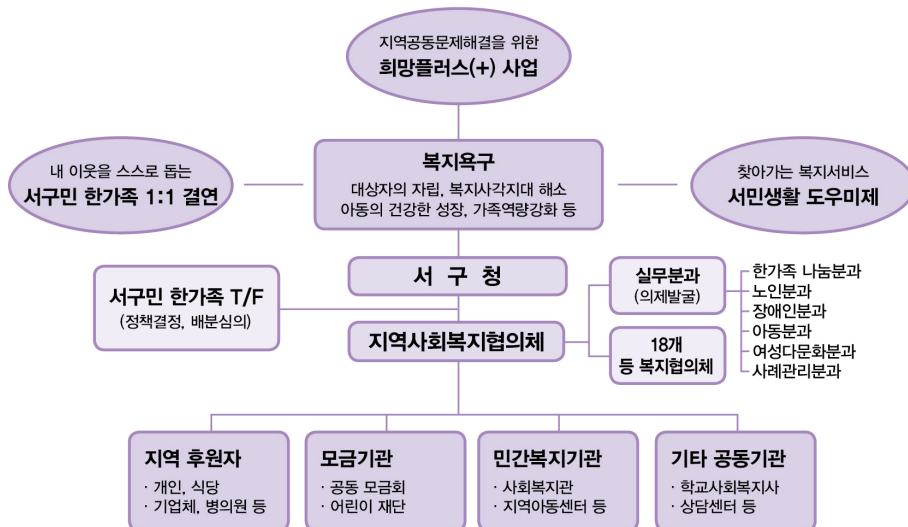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지역 아동들이 최소한 본인의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책상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
-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전액 민간 지원사업으로 예산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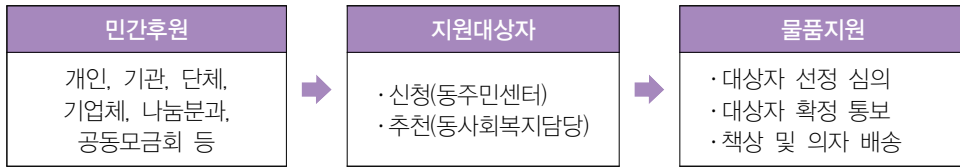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책상이 없는 기초수급자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책상 및 의자 세트(약 57만원 상당)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최초 시행 : 2014년, 3년차 사업)
- 사업추진체계

주민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사업 성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 (주)일룸, 지역후원자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액 후원사업으로 3년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216,000천원 예산절감 효과 발생

☞ 예산 절감액 : '14년 86,000천원, '15년 63,000천원, '16년 67,000천원

-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책상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기초수급자 초등학생 총 440명에게 (주)일룸의 친환경 책상 제공

사업 전			사업 후(2015년말)		
대상	학생 수	미보유학생	대상	학생 수	미보유학생
초등학생 (기초수급자)	802	409(51%)	초등학생 (기초수급자)	802	109(13%)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민간의 지속적인 후원처를 발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지역의 후원자 그룹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지역자원 발굴 우수사례 참고

4. 경북 울주군

천년고장 천사울주 만들기 사업

■ 사업목적

- 2015년도 착한가계 500호점 달성 및 “착한군 선포”에 이어 울주군민 천사계좌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기부문화 정착과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자립을 위한 민간복지자원 확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 지원내용 : 모금기부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15. 11. 10. ~ 2016. 12. 10.
 - 2015. 11. 10. : 울주군 천사계좌 갖기 나눔천사 협약식 개최
 - 2016.6.2. 현재 모금실적 : 3,886명 26,359계좌, 26,459,776원/월
- 사업추진체계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서 제출
 - 울주군 : 지원계획서 검토, 공동모금회 전달
 -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액 사용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1인 3계좌(월 3,012원), 울주군민 참여추진
 - 1차 : 울주군 소속직원 천사계좌 가입
 - 2차 : 사회단체회원, 지역주민 등 자발적 가입유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천사군 선포”
 - 천사계좌 가입자 체계적, 지속적 관리 및 연계사업 추진
 - 복지도시로서의 울주군 이미지 대외홍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돌봄실천
 -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참여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지속발굴
 -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 모금기부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재난구호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 사업 성과

-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자체 예산이 아닌 지역주민의 모금액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민의 소속감과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예산 절감.
- 현재까지의 지원실적 : 44건 23,461천원
- 수범사례
 - 서생면 꽃샘추위 난방비 지원
 - 언양읍 장애모자 주거환경 개선(아래 언론보도 참조)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전 군민 대상 사업홍보 어려움 및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단체별, 이장회의 등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모금과 배분에 대하여 투명하게 추진함을 안내

지역자원 발굴 우수사례 참고

5. 경기도 부천시

함께해요, with 부천 사업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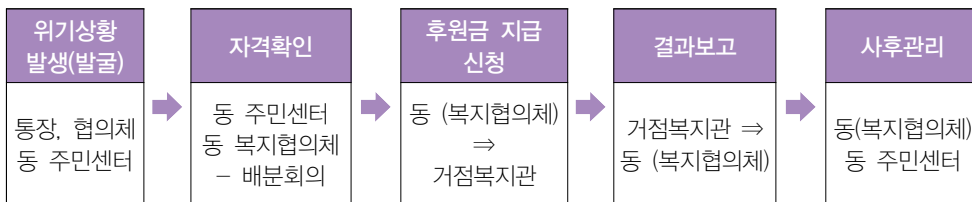
- 복지제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상존
- 동 단위 순수 시민 주도형 자원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지역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100% 시민 기부 · 참여형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위 소득의 90% 이내 위기에 처한 가구
 - 선정기준 이상의 대상은 동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위기 가구의 맞춤형 생계·의료·주거비 (필요시 맞춤형 생필품으로 제공)
 - 동 자체 맞춤형 복지서비 개발·제공(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표활용)
- 사업기간 : 2015. 1.~
- 사업추진체계 : 동 복지협의체 주관 (703명)
 - 동 복지협의체(자원발굴, 사업추진) ⇔ 거점 사회복지관 협약(기부금품 모집)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배분 처리 절차 〉



※ 거점 사회복지관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 사업예산 : 시는 교육 및 워크숍, 후원금은 실제 나눔사업 추진

■ 사업 성과

- 필요한 곳에 배분 할 수 있도록 상시 활용가능한 자원 발굴
 - 총 781백만원의 자원발굴(현금 582백만원, 현물 188백만원)
- 시민이 시민을 지원(시민이 마련한 자원으로 시민을 지원)
 - 위기가정 맞춤형 생계비 지급 : 592명 /2,012건 169백만원
 - 취약계층 현물 지급 : 8,594명 188백만원

· 2016. 3.기준(2015.1.~지속사업) / 단위 : 백만원

자원발굴		배분								비고
건	금액 (백만원)	계		현금		현물		사업		
		명/건	금액 (백만원)	명	금액 (백만원)	명	금액 (백만원)	건	금액 (백만원)	
11,662	781	10,800	586	2,012	169	8,594	188	194	229	· 2016년 159백만원 발굴

- 나눔가게 발굴하여 상시 복지서비스 제공 : 70개소
 - 총1억 5,600만원 자원발굴(현금/재능나눔) / 3,350명 수혜
- 지역에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이 개발 · 지원 (270개)

구분	사업수	사업명
계	270	
복지대상자 발굴사업	16	· 1통 1가구 굴제 : 동 복지협의체 맞춤형 지원 · 독거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 독거노인 방문 사업
맞춤형 지원	66	· 맞춤형 생필품(밀반찬), 가전제품, 리어카 제공 등
자립지원	21	· 주택 청약저축 지원, 디딤돌씨앗 지원, 장학금, 학습지 등
주거환경개선	17	· 집수리, 문풍지 및 방충망, 호더스 가정 청소
위기정지원	13	· 맞춤형 생계, 주거 비 등
방문돌봄 · 정서지원	31	· 방문 생신잔치, 방문 세탁, 집안정리, 가족맺기 사업 등
재능나눔	29	· 이 · 미용 서비스, 외식사업, 현물 등
기타	77	· 자원발굴, 기타 지역복지사업(영정사진, 청소년밥차 등)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각 동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포 필요
 - 나눔사업에 참여하는 각동, 협력기관의 역할, 서식등 수록
- 전 시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
 - 배분사업 선정기준을 정하고, 후원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사용

6. 경기도 오산시

해뜰 푸드셰어링 사업

■ 사업목적

- 푸드 셰어링 사업은 음식을 나눠 쓰는 운동으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나 유통기한 내의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쌀 나눔터 및 공용 냉장고에 기부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공유하여 결식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주민 간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복지대상자
- 지원내용 : 동 주민센터 로비에 쌀 나눔터·따뜻한 냉장고 등 여러 가지물품(쌀,반찬 등)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을 만들고, 명칭을 중앙동 복지브랜드 ‘해뜰’로 부여해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재 구성

‘해뜰’ 사업 (푸드셰어링 사업)	→	 <p>사랑의‘쌀나눔터’</p>	<p>동주민센터 1층 로비에 쌀 나눔터 설치 운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동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 -대장 기입 없이 자율적으로 퍼갈 수 있도록 운영</p>
	→	 <p>‘따뜻한 냉장고’</p>	<p>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나 유통기한 내의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따뜻한 냉장고에 기부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p>
	→	 <p>해뜰 농장</p>	<p>동 주민센터 옥상에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상추 및 잎채소, 고추, 토마토, 애호박 등을 모종·수확하여, 따뜻한 냉장고와 연계하여 나눔</p>
후 영	→	 <p>‘해뜰꾸리미’</p>	<p>‘해뜰 꾸리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민·관협력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망을 세부적으로 나눠洞 복지기능 활성화에 기여 특화사업, 자원봉사, 자원발굴 꾸리미 (3개분과)</p>
홍 보	→	 <p>소식지 ‘해뜰’</p>	<p>소식지 ‘해뜰’ 월보를 발행하여 복지사업안내 및 중앙동 나눔의 현장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시민 기자단(복지통장 등) 참여 유도</p>

-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민(民) : 사랑의 쌀 나눔터, 따뜻한 냉장고는 냉장고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두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뜻한 냉장고 사업’과 관련 냉장고 관리 및 텃밭 가꾸기 등은 ‘해뜰꾸리미’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소식지 ‘해뜰’은 시민기자단의 재능기부로 발간됨.
 - 관(官) : 자원 발굴, 대장관리, 해뜰 꾸리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해뜰’ 발간 및 배부 등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자원발굴

- 사랑의 쌀 나눔터 : 쌀 정기 후원자 발굴
- 따뜻한 냉장고 : 푸드뱅크, 주민 기부참여, 업무협약을 통한 업체 후원, ‘도시농부’텃밭가꾸기 사업인 ‘해뜰농장’과 연계하여 채소류 등 지원

‘해뜰’운영

- 사랑의 쌀 나눔터, 따뜻한 냉장고, 해뜰 농장 연중 운영

소식지 ‘해뜰’ 홍보

- 제작주기 : 월 1회 (첫째주 발간)
- 제작주체 : 시민기자단 재능기부 (복지통장 등 5명)
- 내 용
 - 해뜰사업 소식, 복지사업 안내,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식
 - 자원발굴(민간후원자 등)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려 주세요 등)

■ 사업성과

- 사랑의 쌀 나눔터 : 월 소비량은 300kg으로 월 평균 100명
- 따뜻한 냉장고 : 주 2회 푸드뱅크운영, 월 평균 120명
 - ※ 부식재료 : 콩나물, 두부 등, 주1회 치킨업체 (생닭 40마리), 쌈 채소, 고추 등
- 해뜰농장 : 쌈채소, 고추 등 75개(2016년 5월부터)
- 해뜰 소식지 : 월 2,000부(2016년 2월 창간호)

■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사랑의 쌀 나눔터 운영 시 부정기적 후원을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한 정기적 후원으로 연결

지역자원 발굴 우수사례 참고

7. 제주도 용담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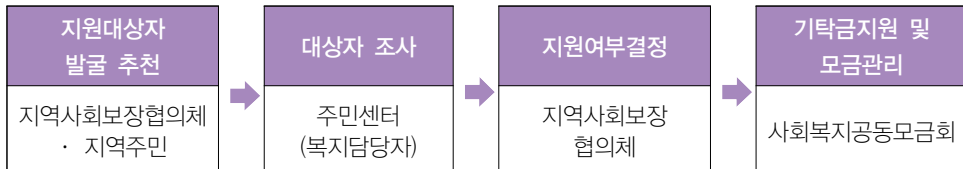
용담골 수놓음 캠페인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고자,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용담2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협약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도배, 방충망 교체, 보일러수리 등), 주거비 등
- 사업기간 : 2015. 2. 2 ~ 2016. 6월 현재
- 사업추진체계
 -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인 및 착한가게 기탁자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
 - ※ 월 기탁금 : 착한가게 30,000원, 개인 10,000원
 - 용담2동 주민센터 : 복지서비스대상자 조사 및 서비스 자원 연계 등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창구 개설 및 모금관리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 착한가게 현판 제작 부착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사업성과

● 2016년

- 모금실적 : 91건(개인 59명, 착한가게 32개소) · 20,380천원

※ 2015 이월액 12,550천원 포함

- 지원실적 : 25가구 · 21,433천원

• 지붕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 방충망교체 등 : 25가구 · 11,433천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 10,000천원(기탁금 5,000, 공동모금회 5,000)

백혈병 소아암환아 희망두드림 공연 연습실 환경조성 및 난타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 :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

※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술무료지원단 운영

용담2동복지위원협의체에서는 관내 기술업체 및 기능인 등 24개 개인·업체·단체가 참여하여 재능기부 및 민간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술무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③ 지역 특화사업 추진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 (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심의) 읍면동협의체에서 결정 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를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사례 : 충남 서천군 마산면 특화사업〉

- 마산면은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승차장 까지 40분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한 마을 → 면 협의체가 병원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
- 그 외 독거노인·장애인가정 등 재래식 화장실 정화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지역특성·주민욕구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사례 : 서울 금천구 가산종합복지관〉

- G밸리 및 지역상권 공동자원 집중 발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로 대표되는 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발굴 등 집중 홍보를 위한 자원개발 민관 TF 별도 구성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우리마을○○○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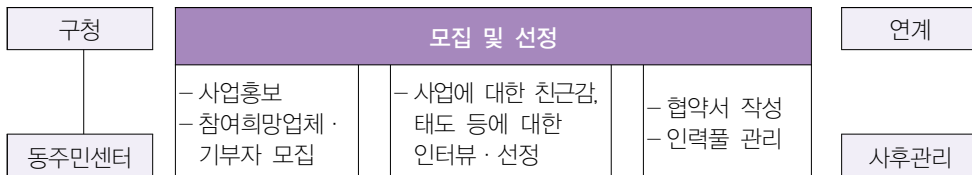
- 지역문제 및 복지요구 해결에 대한 공적제도 지원의 한계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소소한 건강, 복지 욕구를 고려한 보다 디테일한 “지역 돌봄시스템” 구축
- 지역의 여러 문제를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사업내용 : 동별 주민참여형 나눔 사업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1인가정 등
- 지원내용 : 복지대상자의 의식주와 건강, 취미 등 분야별 민간자원에 대한 직접 연계
- 사업기간 : 2015.7. ~ 계속사업
- 사업추진체계

구분	분류	사업명	비고
일상생활지원 네트워크	의	우리마을 세탁소 · 우리마을 의상실	
	식	우리마을 식당 · 우리마을 요리사	
	주	우리마을 맥가이버 · 우리마을 클리너	
	락	우리마을 동아리 · 우리마을 사랑방	
신체 · 정서적지원네트워크	의료정서	우리마을 의(약사) · 우리마을 상담사	
	안전	우리마을 보안관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동 별 우수사례

동	사업명	사업내용	특이점
돈암2동	마음나눔+ 프로젝트 인도(인도서관) 추진계획	- 총11개 사업 • 부엌 : 야쿠르트, 밀반찬 등 • 행복dream : 생일축하 • 누리보듬 : 바자회, 봉사활동 등 • 특화사업 : 복지자원mapping 청소년놀마니또 등	- “휴먼라이브러리 + 공동 경험+“인도”의 사전적 의미 = 인도(인 도서관)프로젝트”라는 사업네임 부여 → 차별성부여
월곡1동	우리마을 000사업	- 분야별(衣食住樂, 보건의료, 건강, 안전, 학습, 기타)사업구분 - 총18개 사업 • 마을냉장고, 맥가이버, 약손, 영화관, 이발소, 전자마트 등	- 관내 의료기관의 봉사단체, 자치회관 프로그램등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사업 운영
장위1동	장위1동 신난~데이(day)사업 추진	- 5개분야13개 사업 • 사모기나사업 : 재활용품매장, 바자회 등 • ~데이(day)사업 : 외식, 집수리, 무료이사, 생일축하나눔 등 • 아름다운가게 : 도시락, 이미용, 비타민 등 제공	- 마을 자원을 특정사업화 하여 다양하게 추진

사업효과

- 민간 자원 연계 활성화 및 촘촘한 인적 안정망 돌봄 체계 구축
- 마을과 주민간의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나눔 활동 분위기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마을경제 활성화

〈활동모습〉

		
〈돈암2동〉	〈월곡1동〉	〈장위1동〉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정감 가득한 동행 프로젝트 사업

※용답동 정감 가득한 동행 프로젝트란?

노숙인시설 입소자들을 봉사활동, 교육, 문화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무료식사 및 생필품 등을 지원받고 참여 건수마다 얼마간의 자립적립금 (새싹통장: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사업목적

- 노숙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
- 혐오시설(노숙인시설)에서 복지자원으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와 융화(복지자원조직)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숙인 시설입소자 30명, 독거노인 98
- 지원내용

노숙인 시설	① 비전트레이닝센터 ② 24시간게스트하우스	➔	봉사 활동	◇ 도시락, 요구르트 배달 인력지원 ◇ 대청소 실시 ◇ 독거노인 집수리 및 이사 인력지원
추진 기관	용답동 마중물보장협의체	➔	지원 내용	◇ 노숙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공연 및 교육) ◇ 노숙인 봉사활동 지원 ◇ 지역특화사업 추진(희망새싹통장-자립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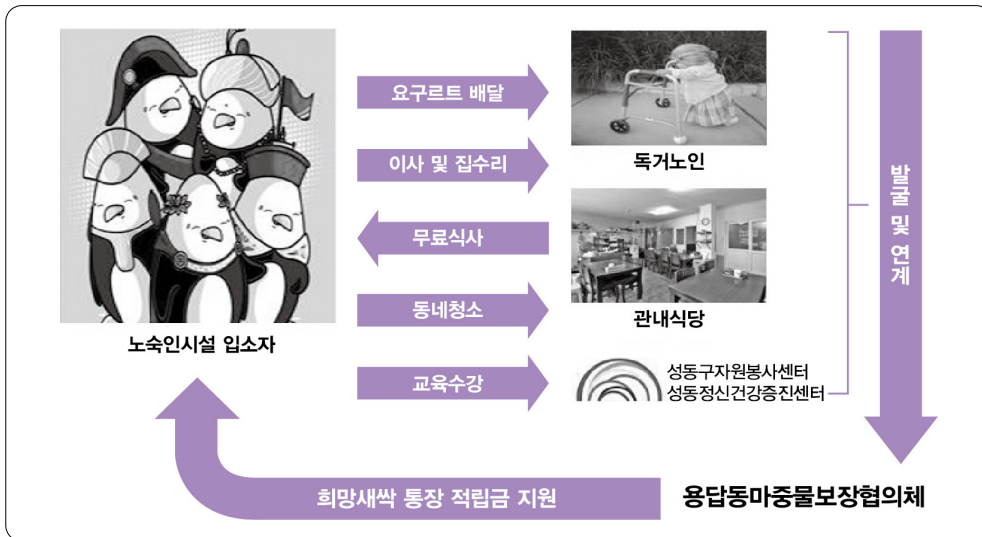
- 사업기간: 연중 (2016. 1. ~)

● 사업추진체계

－ 시행주체별 역할

시행주체	주요역할
노숙인시설	- 자활의지 있는 노숙인 발굴 및 추천 - 봉사활동 참여인력 지원 및 관리 ※ 봉사활동: 도시락 및 요구르트 배달, 마을 대청소, 집수리 및 이사지원 등
추진기관 (마중물)	- 노숙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공연 및 교육) 연계 지원 - 후원자 발굴(기부업체, 종교단체, 착한도움가게, 개인 등) - 지역특화사업 추진: 희망새싹통장사업(노숙인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금) 등
후원자	- 사업비 및 자재 지원 - 지정 착한도움가게(식당)에서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무료식사 제공

－ 추진체계도



●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

- －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관장회의 (2016. 3. 3.)
- －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역복지증진 업무협약체결 (2016. 3. 24.)
- － 대상자 모집 및 면접 (2016. 4. 19.)
- －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실시 (2016. 5. 3.): 사업설명, 정신건강교육, 자원 봉사강의

● 사업예산('16년도)

계	국고	도비	시비	*기타(주민 후원, 기부 등)
7,87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7,872천원

* 기타: 관내 기업(도시철도공사), 어린이집, 교회, 개인 등 후원(3,936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시민 지원사업(3,936천원)

■ 사업 성과

● 사업추진 실적

- 참여대상자 30명 대청소 봉사 후 관내식당 무료식사 (3월, 5월)
- 사랑나눔 콘서트 15명 참여, 집정리 봉사 5명 참여 (4월)
- 참여자 30명 대상 자원봉사 강의 및 정신건강 교육 실시 (5월)
- 독거노인 98명 요구르트배달대상자 확정 및 봉사자배치 (6월)
- 화재로 인한 전소 3가구 피해복구 지원 (6월)
- 저소득층 방충망 설치지원 (예정)

● 예산절감액: 비예산 후원금 사업으로 전액 후원금으로 추진

- 주요사례(이○○): 노숙인시설 입소자로 삶에 비관적이었고 알콜중독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웠으나, 용담동 정감 가득한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활의지 높아져 금주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더욱 성실하게 참여함
1.으로써 건강회복

지역 특화 사업 우수사례 참고

3.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우리는 찾아가는 사이다 사업

■ 사업목적

- 공적부조를 받은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못한 사각 지대 취약계층을 발굴
- 관내 인적·물적자원의 다양한 소통과 활용으로 복지동 6단계 안전망 지원의 내실화에 기여

■ 사업내용

사업명	공동주택관리소와 함께 하는 위기가정발굴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
지원 대상	* 관내 5개단지 내 위기가정	* 독거노인 360명(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지원 기간	연중(2016년신규사업)	연중(2016년 신규사업)
사업 내용	* 각 단지내의 취약계층 발굴 * 위기가구발생시 아파트관리소에서 의뢰	* 독거노인이 안부확인 시, 아파트 문을 여는데 소요되는 여러 문제점 발생 *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중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추진 체계 및 절차	*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 - 하안3동주민센터, 5개 단지 관리소 * 행복하3누리협의체와협약체결(예정) * 관리소 : 단전단수,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대상자 사전동의) * 복지중심동팀: 가정방문 후 사례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사회복지담당자: 대상자별 맞춤형통합 서비스 신청 및 안내	* 사전승낙을 받은 독거노인의 안부확인이 안될 경우, 긴급하게 문을 열고 안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협의체·하안종합사회복지관·13단지관리소 협약체결(예정) * 독거노인 : 사전승낙(위임장) 작성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추천 및 안부 확인 등 * 하안13단지 관리소: 문개폐시 동행 * 동주민센터 : 부양의무자 및 친인척 연락처 확보
예산	비예산	비예산

	복지중심동 하안권역(하안1~4동) 간담회	명예복지동장 활성화
사업 대상	* 하안1동~4동 동장,사무장 사회복지담당자	* 복지동장 및 협업체 위원 등
사업 기간	2016.4월(2016년도 신규사업)	연중(2014년도) 매월 2~3가구(네째주 수요일)
사업 내용	* 각동별사례관리대상자 사례발표 * 사례관리대상자 사례에 따른 논의 * 동별 자원연계에 따른 업무공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발굴 및 현장방문 * 명예복지동장,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3인1조로 가정방문 * 가정방문시, 방문물품 전달
추진체계 및 절차	* 분기별 간담회 실시 * 분기별 각동의 관련단체원 (협의체위원장, 봉사회장 등)과의 간담회 실시 * 각동별 순회간담회 실시	* 명예복지동장 : 동장, 협의체위원, 단체위원 등 * 행복하3누리복지협의체 : 방문시 물품지원 * 복지중심동팀 : 방문대상자 선정 및 사례공유 등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 기부금(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
예산	400천원(전액시비)	1,000천원(후원 및 기부금)

■ 사업 성과

- 공동주택관리소와 함께 하는 위기가정 발굴사업
 - 취약가구 후원금결연 파악, 한부모가정 신청으로 가정방문
 - 밑반찬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치매(중증)어르신 의뢰
 - 저장강박증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력지원 등

지역 특화 사업 우수사례 참고

4. 부산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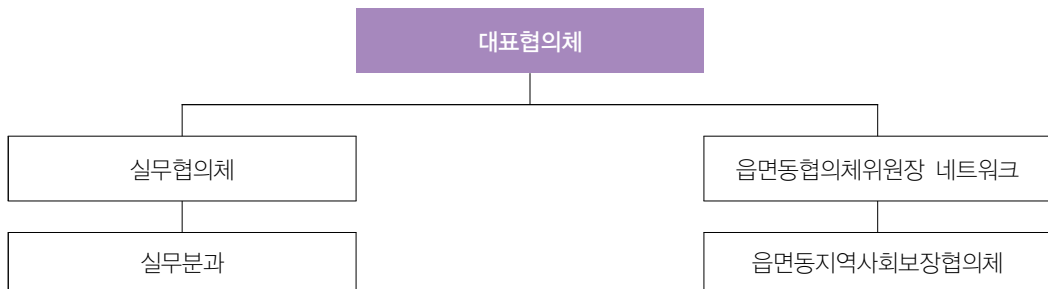
- (동대신3동) 의기양양 새출발! 신입생 입학 선물 지원
 - 주 체 : 동 복지협의체·후원회
 - 내 용 : 취약계층 초중고 입학 학생에게 학용품, 상품권 등 입학 선물 지원
 - 성 과 : 지역 내 아동의 학업열 고취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아미동) 주민, 사랑방을 통해 마을을 보다
 - 주 체 : 비석마을 통반장·동 복지협의체
 - 내 용 : 비석마을 내 빈집을 사랑방으로 조성하여 점심밥상 나누기, 마을카페 공간 마련 등 주민쉼터 형성
 - 성 과 :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 논의, 주민공동체 형성(서울신문 등 3개기관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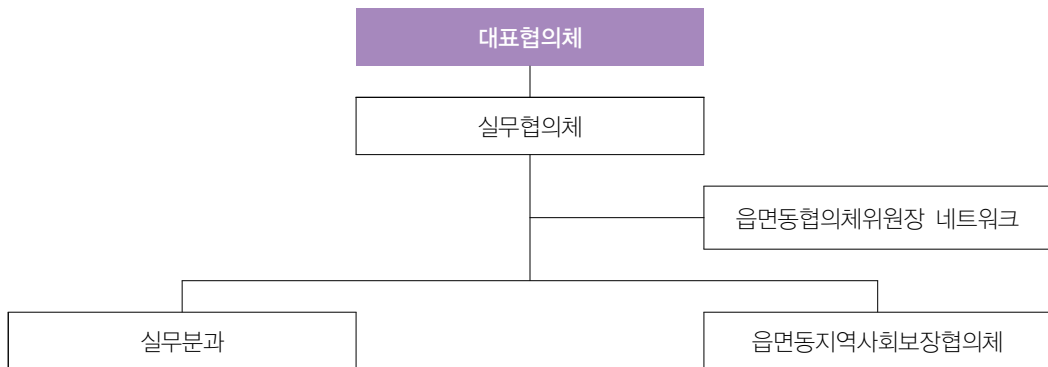
- (남부민1동) 따뜻한 겨울나기 단열 뽁뽁이 지원사업
 - 주 체 : 주민협의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동아대학생
 - 내 용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단열재(뽁뽁이)설치
 - 성 과 :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의 취약점을 논의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 찾기 등 주체적인 마을 변화의 초석 마련(국제신문 등 3개기관 언론 보도)

4)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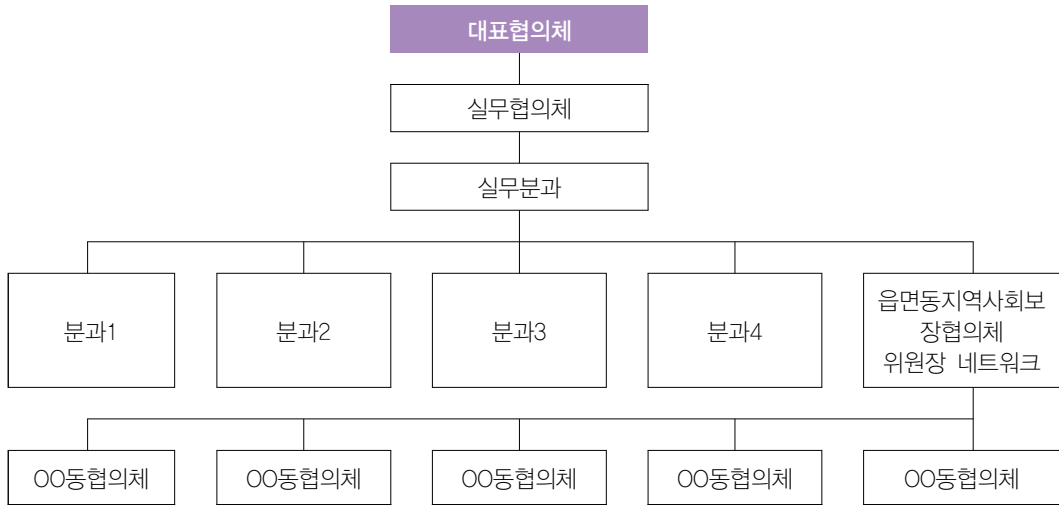
- 지역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취사 선택하여 적정하게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단계 또는 민관협력의 활성화 정도등에 따라 모형 적용 양상에 변화
- (제1안) 대표협의체 내 구성



- (제2안) 실무협의체 내 구성



● (제3안) 실무분과로 읍면동단위 분과 별도 구성·운영



※ (예시)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 목 적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 기반 마련
 - 구성방법 :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
 - 규 모 : OO명 (각 읍면동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 임 원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대표 : 1명(대표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부대표 또는 간사 : 1명(실무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의 역할
 -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회의개최 권장횟수: 연 3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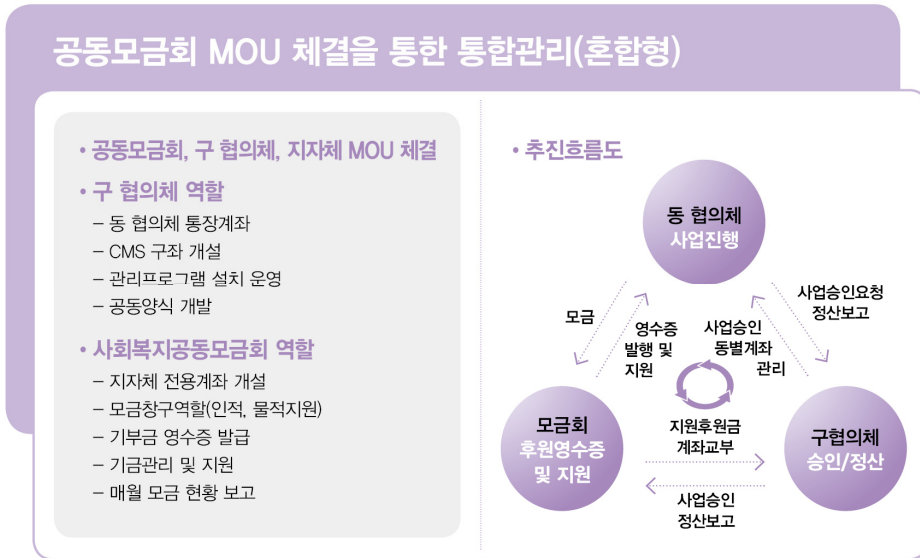
■ 시군구협의체의 읍면동협의체 운영 지원

- 읍면동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 읍면동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 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위원 연합교육 : 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합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서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
-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간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협의체의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 읍면동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읍면동협의체 대표' 등을 구성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읍면동협의체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시군구협의체에서 읍면동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군구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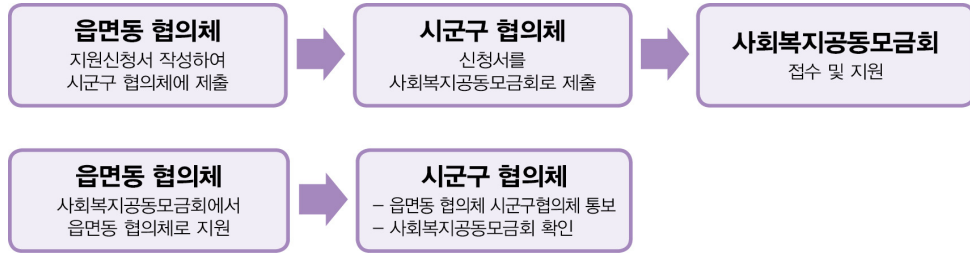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읍면동 협의체 지원 등을 위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이 필요
-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제1안)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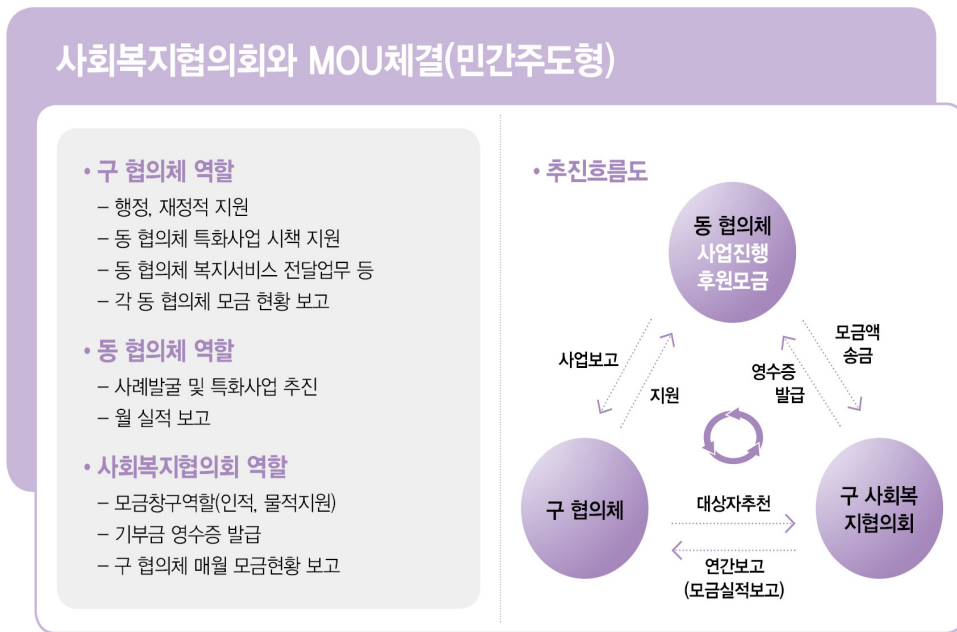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³⁾ : 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00동)”으로 통장개설 또는 읍면동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통장 개설

3) 각 읍면동별로 통장 개설할 경우 위원장 변경시 고유번호증과 통장 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구협의체 통장 개설 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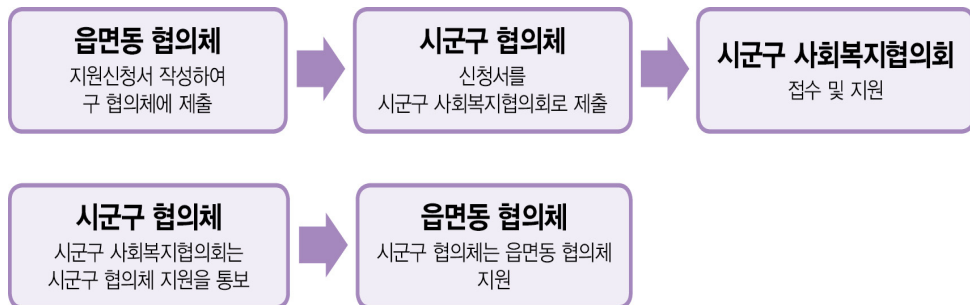
- 지원 절차



- (제2안)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MOU 체결



-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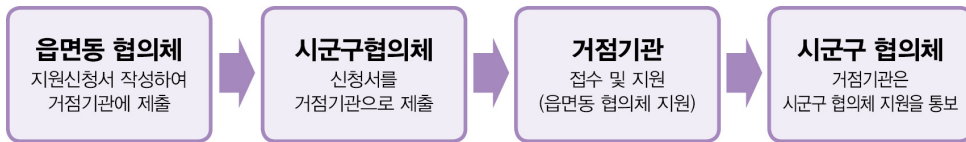


- (제3안)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 : 권역별 거점기관⁴⁾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고유 번호증을 근거로 통장개설

- 지원 절차



※ MOU 체결 대상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 모금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음

4) 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관련 시설로 시군구로부터 위탁시설을 말함.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시)]

사업구분	내 용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시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함 - 지역사회 제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함
서비스 연계·조정	-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누락과 방지 예방함 - 사회보장 관련 자원을 총괄 정리하여 연계 가능 범주 등을 제시함(서비스 자원 목록화, 자원 공유 회의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영역별 지원 사업을 수행 함
교육, 훈련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함
기 타	- 실무분과 특성을 살린 공동 사업을 추진함 -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함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원칙

- 지역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지역 안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특성, 환경, 지역 주민의 욕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협력성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협의를 통해 각 주체별간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
- 참여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의체 특성상 주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

2)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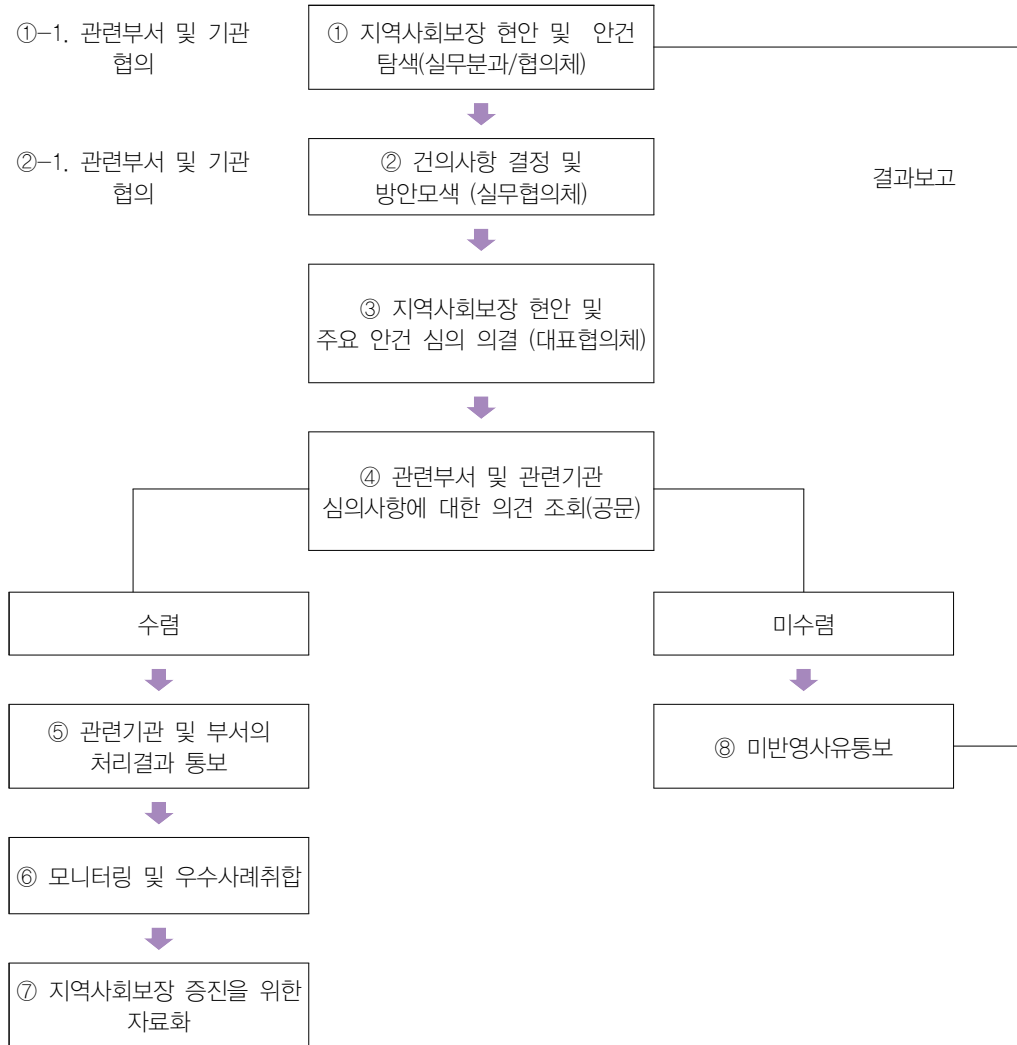
● 주요 안건

주 체	심의·자문 안건(예시)
대표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무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실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3) 의사 결정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들의 선택에 대한 사항
-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 사회가 우선시하는 목적의 구체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함.
 -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절차가 필요

4) 안건 처리과정(예시)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전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 단계별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축적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⑧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2) 행정 지원(예시)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 결과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②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③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업무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구축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 : 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 :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내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 임원회의 역할 :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의 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자 함
- ⑤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

- ① 사무국 직원 선발
 -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사회보장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유급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② 전담직원의 자격요건(권고 또는 예시)

-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수행함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직급	자격요건	비고
국장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시민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⑤ 공무원 7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부장급
팀장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시민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⑤ 공무원 8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팀장
직원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시민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⑤ 공무원 9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⑤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 < 참고 > ⑥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 ①, ② 항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하고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1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7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기본급x60%x연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가족수당	배우자 40,000 가족 1명당 20,000	매월 보수지급일 부양의무자의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x1/209x1.5	매월 보수지급일 월 10시간 적용 (통상임금 : 기본급+복지수당)
복지수당	월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월100,000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 사무국장(부장급), 팀장(팀장급), 직원(사회복지사)로 적용
-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따름.

* **유사기관에서의 경력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함
 ※ '12.1.1. 이전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인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력은 100% 인정함

-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매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④ 채용방식

- 전담직원 채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 시 시군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시군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⑤ 복무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⑥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 결재과정 : 사무국장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결재는 각 시군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재서류를 단일 문서(1개)로 진행하되,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

(ex) 사무국 ↳ 민간분야 담당공무원 ↳ 공공분야

※ 사안별 위임전결 규정(권장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음

〈 위임전결 규정(권장/예시 사항) 〉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자 장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 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		시군구 담당자 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실습 및 연수생 관리	○			

* 비교란의 '공공'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⑦ 사무실의 설치·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독립적인 위치에 설치·운영

⑧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관한 사항은 해 당 시군구별로 조례 또는 자체 협의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함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간 정보교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위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음

IV

기타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IV

기타사항

1.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안내

- 공무수행사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용사항-

①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이란 ?

- (정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이 적용대상에 해당
 - * (적용범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평가등 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적용대상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소관 ‘공무수행(직무관련성)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한하여 적용

직무관련성 해석 내용

*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

- (적용범위) 공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법 제5조부터 제9조)
- ①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개

1.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11.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5.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이 지위·권한 남용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대응요령)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아니하면(청탁에 따라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

※ 다른 공직자등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없음

- 단계적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탁 거절 의사표시 등 현명하게 대처 필요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 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 (신고·처리 방법) 협의체 위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병행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조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 ②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무수행사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을 제재조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청탁금지법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사항 FAQ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Q-1. 민간인 신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떤 근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지난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집」(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 등 위원회 위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

Q-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

-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

Q-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수행 중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 요청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한 제3자 및 위원은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3자(지역주민 등)로부터 부정청탁(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제3자(지역주민 등)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요청사항일 경우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사유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필히 전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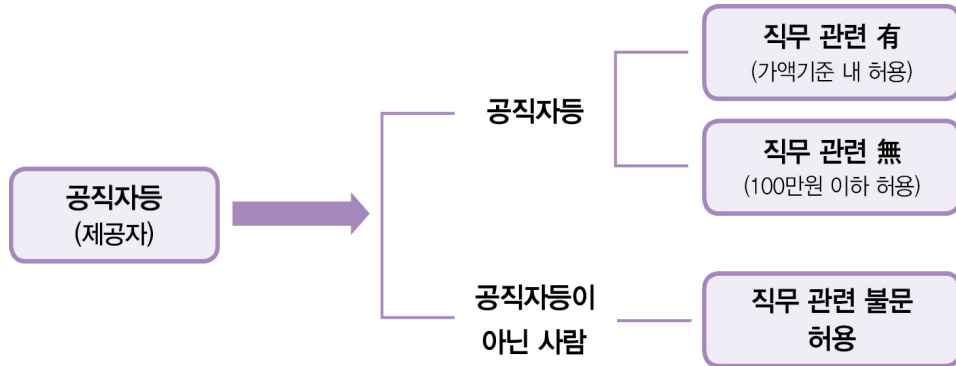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Q-4. 협의체 위원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당연 적용
- 다만,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Q-5. 협의체 위원이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와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은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Q-6. 협의체 위원(공무수행사인)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3만원/인)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Q-7.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또는 민간인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Q-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 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Q-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사회보장급여 제공 >

Q-10. 협의체 위원(A)가 지역유지 민간인(B) 또는 시군구청 공무원 (C)에게 사적 친분이 있는 민간인(D)가 시군구(읍면동)을 통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지역유지(B)와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탁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공무수행사인에게도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 협의체 위원(A)는 제3자(D)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간인(B)와 공무원(C)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E)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Q-11.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복지대상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청탁하는 것을 괜찮나요 ?

-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성립요건 - 법령 위반 〉

Q-12.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어렵겠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인(B)의 수급자 선정을 부탁한 경우, A와 B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은?

- 위원(A)는 지인(B)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인(B)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 선정 등 공직자등의 직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지체 없이’의 의미 〉

Q-13. 협의체 위원(A)가 아는 지인(B)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은 ?

- 위원(A)의 경우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들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이 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 위반 〉

Q-14. 협의체 위원(A)가 아는 공무원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여부는 ?

-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 포함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Q-15.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A)가 협의체 위원(B)에게 지자체 보조금 담당 공무원(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는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주민(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영향을 미치는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등 관련 부정청탁 〉

Q-16. 지역주민(A)는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집수리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당장 자원이 어렵다고 하자, 협의체 위원(B)에게 먼저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담당공무원(C)는 당초 입장을 반복하여 집수리를 받도록 한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 지원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지원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C)는 협의체 위원(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원 순서를 변경하여 접수리를 지역주민(A)가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Q-17.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협의체 위원(B)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 금지법 적용여부는 ?

-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
 - 신청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 확인·문의한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Q-18. 지역주민(A)는 사회보장급여를 읍면동에 신청하였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의체 위원(B)에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방법은 ?

- 지역주민(A)는 제3자(위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협의체 위원(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을 받은 협의체 위원(B)는 부정청탁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보상 책임이 이루어짐).
 -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의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

Q-19. 협의체 위원(A)가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B)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 ?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고의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Q-20. 협의체 위원(A)가 동장(B)의 전화로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서 읍면동장과 함께 있는 지역주민(C)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지역주민(C)가 식사비용 30만원을 계산했는데, 위원(A)는 지역주민(C)를 몰랐고 동장(B)가 식사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안 경우, A,B,C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조치는 ?

- 위원(A)는 지역주민(C)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장(B)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C)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B가 초대한 A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를 접대받았으므로,
 -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지역주민(C)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장(B)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A,B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 기념품 · 홍보용품 단순 전달한 경우 >

Q-21.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으로부터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협의체 위원이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 · 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 · 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인 쇄 일 2017년 2월
- 발 행 일 2017년 2월
-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인쇄/디자인 ㈜나모기획